

충청북도시. 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
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3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시.군통합, 읍면.동의 신설.분할, 인구수의 증감등에 따라
시군의회의원 정수를 조정하려는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선거구 및 정수조정 근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조와 동법
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와
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로 함.
- 선거구는 읍면동수의 증가에 따라 158선거구에서 163선거구로
5개선거구를 신설하였으며, 의원정수는 읍면동 신설 증 5명,
인구 2만초과로 변동 증 5명, 총 10명이 증가하였고, 반면
인구가 2만이하로 감소되어 3명이 줄어 총정수는 173명에서
180명으로 7명이 순 증가함.

※ 증감사유

- 읍면동신설 (증5) : 청주시 복대1, 복대2, 봉명2.송정,
수곡동, 단양군 단성면
- 인구2만초과 (증5) : 청주시 울량.사천, 금천, 용암.용정.
방서동, 충주시 연수동, 제천시 청전동
- 인구2만이하(△3) : 청주시 내덕1, 사직2동, 보은군 보은읍

□ 근거법령

-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, 제26조 ----- 따로붙임
-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제2조, 제3조 -- 따로붙임

충청북도시. 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
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시. 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”
를 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
제3조”로 한다.

[별표]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